

## 법교육 프로그램이 비행 청소년에게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이영수\*\* · 최윤진\*\*\*

### 초 록

이 연구는 비행 청소년들의 위험행동을 약화시키고 적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법교육 프로그램을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효과를 검증하였다. 프로그램은 총 10차시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안산대안교육센터에 위탁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비행 청소년의 법의식과 문제해결능력의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공변량분석(ANCOVA)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 청소년들은 법의식과 법의식 법 사용의사를 제외한 하위영역과 문제해결능력과 하위영역 중 긍정적 문제지향을 제외한 영역에서 평균점수가 향상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법교육 프로그램이 비행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연구의 한계와 프로그램 보완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비행 청소년, 법교육, 위험요인, 보호요인, 법의식, 문제해결능력

\*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 중 일부를 수정 요약함.

\*\* 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 한국법교육센터 기획실장

\*\*\* 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 I. 서 론

청소년 비행은 일반 국민과 여러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는 사회문제 중의 하나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비행은 뚜렷한 감소추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청소년 비행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폭력범, 절도범과 같은 중비행의 증가, 집단화, 저 연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체 청소년 범죄 중에 일회성 범죄에 그치는 청소년의 비율이 80%대 가량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최근 10년간 소년범죄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지만 상대적으로 재범률은 1995년 22.3%, 2002년에는 36.5%였다가, 2006년에는 36.1%로 여전히 30%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청소년백서, 2007).

청소년 비행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발달 단계상 문제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을 찾아 억제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비행 행동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개인의 비행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을 위험요인으로, 부정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중재하거나 완화시켜 결과적으로 문제행동이 야기될 수 있는 확률을 낮추는 요인을 보호요인으로 정의하였다(박현선, 1998; 유성경, 2000; 양죽국, 2002).

최근의 연구들은 비행 청소년을 다루는데 행위 중심의 단속이나 원인을 제거하는 기존의 방법이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보다 근본적인 예방이 되지 못함으로 행위자 중심의 철저한 교육과 지도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비행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나 원인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보호요인을 증진시켜야 한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양죽국, 2002).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비행 청소년 대상의 여러 프로그램들은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고 보호요인을 증가시켜 재활력을 높이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sup>1)</sup>.

그러나 비행 청소년에 대한 기존 프로그램들은 청소년이 법과 규범을 위반한 문제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비행이라는 용어는

1) 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비행 청소년을 위한 문제해결훈련 집단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이재경, 2000), 비행 청소년의 자아성장프로그램 효과(이정연·김진희, 2001), 보호처분을 받은 비행 청소년을 위한 집단치료 프로그램 모형 개발(정문자·송정자, 2001),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결연관계의 새로운 모델: 멘토링 프로그램(김지선, 2005), 보호관찰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 향상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김남희, 2007) 등이 있다.

1899년 미국의 일리노이에서 ‘청소년 비행에 관한 법률’에 적용된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상적으로 비행을 ‘도리나 도덕 또는 법규에 어긋나는 행위’를 의미하고 성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조현빈, 2003).

법교육은 이렇게 법과 규범을 위반한 비행 청소년의 보호요인을 강화시켜 주는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교육방법 중 하나로서 적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74년 청소년비행예방법(the Juvenil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을 제정한 후, 비행예방 및 범죄자들에 대한 교정교육의 수단으로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곽한영, 2007). 법교육은 청소년 범죄자들을 재활시키는데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소년범의 추리력과 문제해결능력,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의 사고와 감정을 포용하게 하는 기술을 담고 있으며, 준법 행위가 향상되고 궁극적으로 재비행률이 낮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Ross, 199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범죄예방 및 교정교육으로서의 법교육 프로그램의 역할과 가능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행 청소년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제 구성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때, 비행 청소년이 비행 행동을 감소시키고 개인의 적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인 차원의 보호요인 중 문제해결능력과 법의식을 중심으로 변인을 설정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비행 청소년을 위한 법교육

#### 가. 비행 청소년을 위한 법교육의 개념과 역할

법은 인간이 공동체 생활을 유지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보편적인 원칙으로 사회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해 놓은 규칙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법은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죽을 때까지, 차를 탈 때나, 물건을 구입할 때나, 공부를 하고 일을 하는 모든 일상생활이 법과 함께 생활한다고 할 수 있다. 마치 우리가 숨을 쉬면서도 공기를 느끼지 못하듯이 우리가 삶을 살아

가면서 느끼지는 못하지만 법이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에게나 청소년에게 있어 법은 어렵고 딱딱하고 재미없는 것이며, 법률가들이나 알아야 할 전문적이고 복잡한 언어로서 인식될 뿐이다(김태명, 2007).

아직 규칙이나 규범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있어 사회질서 및 사회규범에 대한 인식은 성인에 비해 훨씬 더 부정적이며, 법에 대한 신뢰감도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면이 강하여 법대로 살면 손해 본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현상은 법에 대한 무지, 법적인 무력감 또는 법을 기피하려는 냉소주의적인 태도 등 여러 가지 사회 내의 구조적인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며, 중고등학교 단계에서 적절한 법의식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법적 사고 능력을 심어주지 못한 데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류성욱, 1995).

한편으로 법을 위반한 청소년들에게는 법은 국가가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통제적 수단으로서 인식된다. 즉, 법은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규범이며, 결국 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비행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법질서 및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변화시키고 법 개념화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행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법의식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로서 법교육을 제시하였다(강윤정, 1992; 김준호 1996, 곽한영, 2007).

곽한영(2007)은 기존의 법학교육(legal education)과 법교육(law-related education)의 차이를 제시하며 ‘법교육이란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법학교육과는 달리 청소년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법의 형성과정, 법제도와 그 기초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제공하는 교육’이며, ‘지식, 기능 등의 습득을 통해 법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법적 공동체 생활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합리적 과정을 통해 사회를 유지, 변화시켜나갈 수 있는 건전한 ‘법의식’을 지닌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라 하였다.

미국에서는 법교육 프로그램이 학교 법교육보다 청소년 비행예방 및 범죄자들에 대한 교정교육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 법무성 산하의 청소년비행예방국(OJJDP)에서는 청소년들이 국가의 법과 통치에 내재한 원리들을 충분히 인식하게 된다면 범죄 행동을 더 적게 저지를 것이라 가정하고,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의회 지도자들은 법교육을 통해 범죄예방을 시도하기로 하고 먼저 1974년 청소년비행예방법(the Juvenil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을 제정한 후, 미국 전역에 걸쳐 다양한 법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박성혁·곽한영,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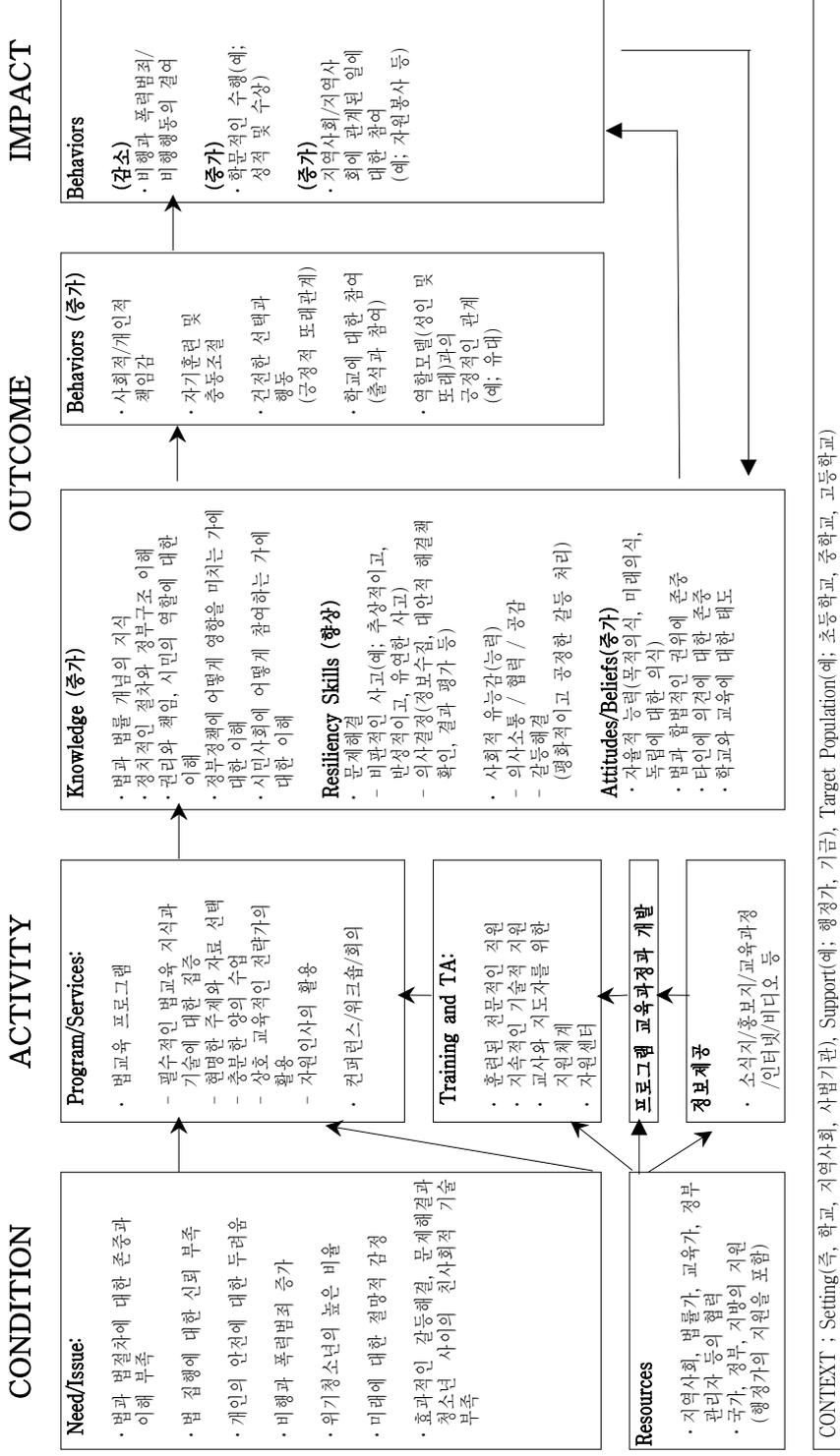
이와 같이 법교육은 시민교육 차원에서 시작하였으나, 비행 청소년 예방이나 재비행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특히 국내 법무부에서 추진한 법교육지원법이 2008년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이 개발·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나. 비행 청소년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기존 연구에서는 비행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법에 대한 마음 자세나 태도(문용린, 1994; 김준호, 1996; 김준호, 2004; 조현빈 2003; 곽한영, 2007; 우국창, 2008)에 주목하고 있으며, 비행의 원인은 결국 청소년들이 건전한 법의식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법의식을 강화시켜 비행 행위를 예방·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동원(2003)은 비행청소년의 경우 전반적인 재범 가능성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사회에 대한 적대감 및 편견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기존의 범질서 및 사회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높다고 하였다. 강운정(1992)은 비행청소년이 가진 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관련하여 비행 청소년 및 범법자의 왜곡된 법 개념에 대한 원인 규명과 법 개념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김준호(1996)는 법을 위반한 비행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비행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법의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요구되며, 이러한 방안 중의 하나로서 ‘법교육’을 제시하였다.

Arizona Foundation for Legal Services & Education에서는 법교육이 비행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법교육이 지식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다. 법교육은 청소년 비행과 폭력범의 증가, 위기 청소년 비율의 증가, 미래 인식에 대한 절망, 개인 안전에 대한 두려움, 법 집행에 대한 신뢰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법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 태도를 향상시키며, 이러한 지식과 기술, 태도는 개인의 사회적 책임감과 자기조절 및 충동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며, 또래 관계와의 긍정적 영향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한다. 개인의 내적 변화만 아니라 성인과의 긍정적 관계 형성, 학교나 지역사회와의 참여 증가, 청소년기에 중요한 학업성적 향상에 영향을 줌으로써 학교에 적응에 도움을 제공한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비행과 폭력범죄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림 1] 비행 예방을 위한 법교육  
출처 : <http://www.azflsc.org/academy/>(Arizona foundation for legal service & education)

법교육이 청소년 비행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꾸준히 제기되었는데, Ross(1990)는 법교육이 청소년 범죄자들을 재활시키는 데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소년법의 추리력과 문제해결력을 높이고, 타인의 견해를 인정하고, 타인의 사고와 감정을 포용하게끔 유도하는 기술을 담고 있다고 하였다.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청소년법정<sup>2)</sup>은 참가하는 청소년들이 피고와 배심원으로 재판 과정에 참여하면서 법의 적용 절차를 배우고, 청소년들에게 개인, 가족, 그리고 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교육시키는 최상의 교육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Rothstein, 1985).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청소년법정의 구성원(검사, 판사, 변호사, 배심원 등)으로 참여하면서 타인과의 의사소통 방식을 배우고,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감으로써 문제해결력이 발달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곽한영, 박성혁, 2007).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소년들의 재 검거율은 다른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소년들보다 더 낮고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수행율이 매우 높으며, 법정에서 다시 오는 청소년들도 거의 없다고 하였다(Curd-Larkin, 1982).

법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모의재판과 입법청문회, 판례분석, 분쟁해결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분명한 정답이 없음을 알게 하는데 효과적이다. 이는 문제해결과정에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원인과 다른 해결책을 확인하며, 다양한 대안들의 결과를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추상적, 반성적, 비판적으로 유연하게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며, 법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함으로써 법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법 위반에 따른 반성적 사고와 추론, 대안 모색에도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즉 법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먼저 할 것이라는 점에서 충동 억제 능력을 높여주게 된다(Norma, 1997).

곽한영(2007)은 국내 여자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교육을 실시하고 법교육 수업을 받은 청소년들이 법의식과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2) 미국의 청소년법정은 teen courts나 youth courts, peer courts로도 불리기도 하며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동료청소년들이 재판하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법정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다루기 위한 정규소년사법절차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공식적인 처벌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면 전과의 기록이 남지 않는다.

### 다. 비행 청소년을 위한 국내 법교육의 현황과 한계

법교육이 비행 및 범죄 예방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국내 법교육은 학교에 교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초·중학교에서는 별도의 법교육 과목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일부 사회 교과 내용 중에 법과 관련된 내용을 가르치고 있으며, 주로 국민의 의무만을 강조하는 정치교육 성격을 띠고 있다.

학교 교과 중심의 법교육과는 달리 학교 밖에서도 활발하게 법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비행 청소년을 담당하는 법무부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법교육 사업을 대표 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고 일반 국민과 청소년을 위한 생활법률 책자와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2008년에는 법교육지원법을 제정하여 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기반도 마련하였다. 그러나 법무부와 민간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법교육 프로그램은 일반 청소년 대상이며,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비행 예방이나 교정교육으로서의 접근은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관련 연구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비행 청소년에 대한 법교육 프로그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외국과는 달리 국내 연구나 프로그램 개발은 미흡한 상태이다. 비행 청소년 대상으로 법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강인화, 1992; 김준호, 2004; 이새임, 2004; 곽한영, 2007; 우성희, 2007), 실제 과정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는 한편(곽한영, 2007)이다. 이 연구에서는 비행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비행억제요인으로 법의식을 제시하고, 법교육이 비행 청소년에게 효과적인 교육 방법 중 하나임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시도된 법교육은 기존 사회과 교육에서 진행되었던 생활법 중심으로 비행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최근 비행 및 범죄예방 차원으로서 법교육의 필요성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 법무부의 조직 개편을 통해 범죄예방정책국을 신설하고 그동안 회복적·치료적 사법 제도 중심에서 예방적 사법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형사정책으로 법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법교육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범죄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범죄예방정책학술대회, 2008).

이와 같은 국내 선행연구와 국내 법교육 동향과 적용된 프로그램을 살펴 볼 때, 현

재 비행 청소년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 연구는 외국에 비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비행 청소년을 위한 법교육의 필요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행 청소년의 비행 예방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개입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 3. 법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주요내용

#### 가. 프로그램 구성 및 목표

법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기에 앞서 비행 청소년 특성에 맞는 법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째, 비행 청소년은 대부분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상담이나 교육에 참여하기 때문에 참여 동기가 없거나 부족한 비자발적인 태도가 나타난다(정문자·송성자, 2001). 이로 인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하더라도 소극적인 현상이 나타나며, 극단적으로는 잠을 자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자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청소년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상생활을 소재로 하거나, 청소년이 관심을 갖는 주제를 선택하였다.

둘째, 비행 청소년들은 주의집중 시간이 짧고, 지적 경험이나 지식적인 측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편적인 지식 위주의 강의식 교육방법은 청소년들의 참여를 저하시킬 수 있다. 특히 법은 어렵고 딱딱하다<sup>3)</sup>는 일반적인 인식과 함께 전문적인 내용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수업내용에 있어서도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에 법교육 수업에서 자주 활용되는 모의재판, 판례(사례)분석, 역할놀이, 게임과 퀴즈, 활동지 작성 등과 같이 법을 소재로 하는 활동위주의 수업 방법을 사용하였다.

셋째, 비행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비행 행위를 변화하거나 교정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의 부정적인 측면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피하도록 구성하였다. Fox(1994)는 법교육에서 청소년들에게 범죄와 같은 불법적인 활동들을 저지

3) 법무부에서 조사한 국민 법의식 실태조사(2007)에 따르면 청소년의 82.7%가 법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유로는 법률용어가 딱딱하고 생소해서(49.3%), 법에 대해 배울 기회가 없어서(16.0%)로 응답하고 있다.

르면 더 나쁜 결과가 뒤따른다는 일종의 겁을 주어 합법적인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교육 방식은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행 청소년들이 범죄의 결과와 부정적 행동으로 인한 이익과 그로 인해 피해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법을 어겼을 때 사람들이 받는 피해 그리고 그에 대한 처벌을 동시에 고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바람직한 법의식을 현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박성혁·웅진환, 2007). 이런 점을 고려하여 비행 청소년들의 행동에 따라 받게 될 피해와 처벌, 피해자의 고충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법교육 프로그램은 비행 청소년들의 위험요인을 완충시키고 적응능력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반복적인 비행을 예방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비행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법을 강제적이고 처벌적인 지배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법에 대한 낮은 인식을 갖게 하고 결국 법을 쉽게 위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비행 행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행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법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비행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충동적으로 대처하거나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법적인 문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행 청소년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비행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문제 인식을 개선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법적 지식과 필요성을 인식한다 하더라도 법을 지키는 것이 자발적 의지가 아닌 강제적 힘에 의해서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법을 자신의 삶을 보호해준다고 여기지 않으며, 법을 지키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이에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할 수 있도록 법에 대한 신뢰감과 친근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 나. 프로그램의 회기별 주요내용

위에서 제시한 10차시 과정의 프로그램 회기별 프로그램명과 주요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회기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1회기	설문조사 및 프로그램 소개	- 사전 설문조사 실시 - 프로그램 및 전체 일정 소개
2회기	나의 자화상 (나는 누구일까요?)	- 나의 자화상 그리기 - 나에 대한 소개자료 제작 및 발표 - 참가자에 대한 이해와 관계형성 - 법적으로 보호받는 존재임을 인식
3회기	게임의 규칙	- '법 빙고 게임' - '솔로몬의 지혜를 모아라' 게임 - 게임의 규칙 및 규칙의 필요성 소개 - 수업과정에 필요한 규칙 제작 - 게임에 사용된 법적 단어 설명
4회기	당신에게 있어 법이란?	- 찰흙을 이용한 '법은 □이다' - '법은 □이다, 법은 □가 아니다' - 법에 대한 부정적, 긍정적 생각 발표 - 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
5회기	나를 보호해주는 법	- 청소년과 관련된 법 소개 - 출생과 결혼, 사망에까지 법의 관계 이해 - 아르바이트 시 법적 보호 관계 설명 - 근로계약서 등 법적 서류 작성 - 법적으로 보호받는 중요한 존재
6회기	범죄와 처벌	- 형법에 대한 이해 - 죄와 벌에 대한 이해 - 죄와 벌 규정에 대한 작성 및 발표 - 소년사법처리 과정에 이해 - 소년사법처리 과정의 보호 제도 설명
7회기	도전! 솔로몬의 선택	- 법적 지식 퀴즈 게임 - 법적 상황에 대한 사례 퀴즈 게임 - 각 퀴즈문제에 대한 사유 발표 - 청소년과 관련된 법적 지식 설명
8회기	나는 야! 명재판관	- 법적 쟁점에 대한 분석 - 청소년 흡연, 나이, 폭력에 대한 이해 - 법적 쟁점에 대한 나의 생각 정리 - 법적 쟁점에 대한 판결문 작성 및 발표
9회기	우리들이 만드는 모의재판	- 사건에 대한 쟁점 분석 - 참가자 역할 배정 - 모의재판 실시 - 재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
10회기	프로그램 종결	- 소감문 작성 및 발표 -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 및 사후조사 실시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경기도 안산대안교육센터(구 안산소년원)<sup>4)</sup>에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 5일 과정의 교육에 참가한 51명의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체 51명의 청소년을 센터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성별이나 연령대, 학력분포 등을 고려하여 실험집단 26명과 통제집단 25명으로 구분하였다. 프로그램 운영 과정 중에 무단결석,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하여 실험집단 2명, 통제집단 2명이 제외되었고 설문 분석 시 부실하게 응답한 1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실험집단 23명과 통제집단 23명으로 총 46명이었다.

#### 2. 연구 설계

비행 청소년의 위험행동을 감소시키고 적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호요인 중 개인 보호요인에 중 문제해결능력과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에 걸쳐 총 10회의 법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였으며, 1회당 약 60~80분의 수업을 편성하였다. 편성된 수업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분한 후, 실험집단에게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통제집단은 별도의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센터에서 운영하는 문제 유형별 전문 교육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운영 이외에 공통적으로 운영된 과정은 자원봉사와 등산 활동, 장애체험, 모험활동, 극기 훈련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4) 법무부에서는 2006년 이후 17개의 소년 보호 기관 중 대전소년원, 부산소년분류심사원 등 대표적인 시설 내 처우 8개 기관을 폐지하고 기능을 인근 소년원으로 통합하여 비중을 감소시키고 사회 내 처우 기능을 강화하였다. 이중 안산소년원은 명칭을 안산대안교육센터로 변경하고 비행 청소년 대상으로 문제 유형별 집중 교육 프로그램, 자기변화 과정, 상담활동, 체험활동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3. 측정도구

#### 가. 문제해결능력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척도는 D'Zurilla와 Maydeu-Olvaes(1999)의 사회적 문제해결 검사 개정판(SPSI-R)을 최이순(2002)이 우리말로 번안한 것을 수정·보완하여 29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여 사용한 엄태완(2004)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개의 하위 요인으로 긍정적 문제지향(PPO), 부정적인 문제지향(NPO), 합리적인 문제해결(RPS), 충동·부주의 스타일(ICS), 회피스타일(AS)로 구성되어있다. 질문은 긍정적 내용과 부정적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문제해결능력의 신뢰도는(cronbach  $\alpha$ ) = .880으로 나타났다.

#### 나. 법의식

청소년의 법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법의식 척도는 곽한영(2007)이 기존 법의식 연구들을 통해 제작한 측정도구를 비행 청소년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40개의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수정된 척도는 인지적 영역으로 '법의 필요성 인식', '법지식'으로 15개 문항, 정서적 영역으로 '법에 대한 친근감', '법에 대한 신뢰감', '준법에 우호적인 태도'로 15개 문항, 행동적 영역으로 '법 사용의사'와 '법적 효능감'으로 1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곽한영의 연구에의 법의식 신뢰도(cronbach  $\alpha$ )는 최소 .731에서 최대 .891까지의 값을 보여 전체적으로 높은 내적 일치도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cronbach  $\alpha$ ) = .828로 나타났다.

### 4. 분석방법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한글 프로그램을 통해 통계 처리되었다. 효과성 검증에 앞서 우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종속변수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 T-test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무선헌당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였다.

법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사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변인 간의 평균 및 표준편차의 차이를 비교하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점수를 통제한 후 관심변인의 사후 점수 차이를 검증하는 공변량분석(ANCOVA)을 사용하였다.

## V. 연구결과

### 1. 연구 대상자의 동질성 비교

효과성 검증에 앞서 우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종속변수에 대한 사전점수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독립 T-test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사결과 문제해결능력은 실험집단의 평균이 2.71점, 통제집단 평균 2.60으로 0.11점 높게 나타났다. 범의식의 평균점수는 실험집단 2.50점, 통제집단 2.57점으로 통제집단 청소년이 0.06점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동질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P>.05$ ). 이로써 무작위로 선별되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비교적 유사한 속성을 지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사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종속변인에 대한 동질성 검사

척도 / 구분	사전검사		t	유의도	
	평균(M)	표준편차(SD)			
문제해결 능력	실험집단(N=23)	2.71	.336	1.135	.263
	통제집단(N=23)	2.60	.345		
범의식	실험집단(N=23)	2.50	.262	-1.015	.316
	통제집단(N=23)	2.57	.209		

## 2. 법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법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대상으로 문제 해결능력과 법의식의 사전-사후 점수에 대해 평균비교와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사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각각의 사전, 사후 점수의 평균과 집단 내 사전-사후 점수간의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가. 문제해결능력

법교육 프로그램이 비행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집단 청소년과 통제집단 청소년간의 사전-사후 값의 평균(M)과 표준편차(SD) 점수에 대한 변화를 조사하였다. 이렇게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문제해결능력 사전·사후 점수 비교

척도	구분	검사 시기				
		사전검사		사후검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문제해결 능력	실험집단(N=23)	2.71	.336	2.91	.320	
	통제집단(N=23)	2.60	.345	2.57	.266	
하 위 변 인	긍정적 문제지향	실험집단(N=23)	2.99	.380	3.07	.347
		통제집단(N=23)	2.88	.412	2.86	.470
	부정적 문제지향	실험집단(N=23)	2.70	.499	2.99	.528
		통제집단(N=23)	2.53	.460	2.48	.587
	합리적 해결기술	실험집단(N=23)	2.66	.444	2.94	.338
		통제집단(N=23)	2.63	.476	2.63	.362
	충동부주의 반응양식	실험집단(N=23)	2.57	.500	2.64	.435
		통제집단(N=23)	2.41	.480	2.28	.466
	회피 반응양식	실험집단(N=23)	2.76	.581	2.91	.503
		통제집단(N=23)	2.57	.545	2.45	.494

법교육 프로그램이 실험집단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의 평균 점수는 2.71점에서 2.91점으로 0.2점이 상승한 반면, 통제집단의 평균 점수는 2.60점에서 2.57점으로 -0.03점이 감소하였다.

비행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의 하위변인에 대한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점수를 비교해보면 모든 하위변인에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상승정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부정적 문제 지향의 평균 점수는 0.29점으로 가장 높은 상승을 보였으며, 합리적 문제해결의 평균 점수는 0.28점, 문제 회피반응양식의 평균 점수는 0.25점, 충동부주의 반응양식의 평균 점수는 0.07점이며, 긍정적 문제지향의 평균점수는 0.06점 상승하여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평균 점수는 전체적으로 낮아졌다. 충동부주의 반응양식이 -0.13점으로 가장 낮게 변화하였으며, 가장 적게 낮아진 합리적 해결기술의 평균 점수의 차는 없었다.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한 이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문제해결능력의 다섯 개의 하위변인 모두에서 실험집단의 평균 점수가 통제집단의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 점수의 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문제해결능력의 사전 점수를 공변인으로 처리한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공변량분석 결과 주효과(집단)에 따른 부정적 문제지향 수준은 실험집단 2.99점, 통제집단 2.48점으로 실험집단이 높았으며  $p < .01$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합리적 해결기술 수준의 주효과(집단)에 따른 공변량분석 결과 실험집단이 2.94점으로 통제집단의 2.70점보다 높았으며  $p < .05$ 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동부주의 수준의 주효과(집단)에 따른 공변량분석 결과 실험집단 2.64점, 통제집단 2.28점으로 실험집단이 높았으며  $p < .01$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회피반응양식 수준의 주효과(집단)에 따른 공변량분석 결과 실험집단이 2.91점으로 통제집단의 2.45점보다 높았으며  $p < .01$ 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능력의 공변량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문제해결능력의 공변량분석 주요 결과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문제해결능력		공변인	.036	1	.036	.409	.526
		집단	1.427	1	1.427	16.244***	.000
		오차	3.778	43	.088		
하 위 변 인	긍정적 문제지향	공변인	.441	1	.441	2.686	.109
		집단	.617	1	.617	3.758	.059
		오차	7.064	43	.164		
	부정적 문제지향	공변인	.281	1	.281	.899	.348
		집단	2.641	1	2.641	8.457**	.006
		오차	13.429	43	.312		
	합리적 해결기술	공변인	.415	1	.415	3.578	.065
		집단	.743	1	.743	6.398*	.015
		오차	4.991	43	.116		
	충동·부주의 반응양식	공변인	.099	1	.099	.480	.492
		집단	1.620	1	1.620	7.884**	.007
		오차	8.837	43	.206		
	회피 반응양식	공변인	.078	1	.078	.307	.582
		집단	2.286	1	2.286	9.044**	.004
		오차	10.868	43	.253		

\*:p<.05, \*\*:p<.01, \*\*\*:p<.001

위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실시한 법교육 프로그램은 비행청소년들의 문제해결능력 중, 부정적 문제지향, 합리적해결기술, 충동부주의, 회피반응양식 그리고 전체적인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법의식

법교육 프로그램이 비행 청소년의 법의식에 미치는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집단 청소년과 통제집단 청소년간의 사전-사후 값의 평균(M)과 표준편차(SD) 점수에 대

한 변화를 조사하였다. 이렇게 비교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법의식 사전·사후 점수 비교

척도 / 구분			검사 시기				
			사전검사		사후검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법의식			실험집단(N=23)	2.50	.262	2.90	.207
			통제집단(N=23)	2.57	.209	2.54	.206
하 위 변 인	인 지 적	법의 필요성 인식	실험집단(N=23)	2.70	.482	2.97	.253
			통제집단(N=23)	2.79	.488	2.63	.419
		법지식	실험집단(N=23)	2.40	.363	3.14	.427
			통제집단(N=23)	2.42	.581	2.53	.554
	정 서 적	법의 대한 친근감	실험집단(N=23)	2.25	.476	2.77	.332
			통제집단(N=23)	2.37	.355	2.45	.284
		법에 대한 신뢰감	실험집단(N=23)	2.49	.539	2.82	.395
			통제집단(N=23)	2.60	.486	2.47	.350
	준법에 우호적인 태도	실험집단(N=23)	2.50	.413	2.80	.319	
		통제집단(N=23)	2.37	.423	2.32	.412	
	행 동 적	법 사용의사	실험집단(N=23)	2.64	.485	2.92	.281
			통제집단(N=23)	2.85	.406	2.85	.342
법적 효능감		실험집단(N=23)	2.41	.538	2.82	.324	
		통제집단(N=23)	2.44	.355	2.52	.37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법의식에 대한 평균 점수의 변화를 비교하면 실험집단의 평균 점수는 2.50점에서 2.90점으로 0.40점이 상승하였으며, 통제집단은 2.57점에서 2.54점으로 감소하였다.

실제 각 하위변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하위변인을 살펴보았다.

법의식의 인지적 영역은 ‘법지식’과 ‘법의 필요성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두 하위변인에 대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점수를 비교한 결과 실험집단의 법의 필요성 인식의 평균 점수는 2.70점에서 2.97점으로 0.27점이 상승하였다. 반면 통제

집단에서는 법의 필요성 인식의 평균 점수는 2.79점에서 2.63점으로 0.16점이 감소하였으며, 법지식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법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험집단의 평균 점수는 2.40점에서 3.14점으로 0.74점이 상승하였다. 반면 통제집단의 평균 점수는 2.41점에서 2.53점으로 0.12점이 상승하였다.

다음으로 법의식의 정서적 영역은 ‘법에 대한 친근감’, ‘법에 대한 신뢰감’과 ‘준법에 우호적인 태도’의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하위변인에 대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점수를 비교한 결과 실험집단의 법에 대한 친근감의 평균 점수는 2.25점에서 2.77점으로 0.52점이 상승하였다. 반면 통제집단은 법에 대한 친근감의 평균 점수가 2.37점에서 2.45점으로 0.08점만 상승하였다. 법에 대한 신뢰감에서는 실험집단의 평균 점수는 2.25점에서 2.77점으로 0.52점이 상승하였으나, 통제집단 평균 점수는 2.37점에서 2.45점으로 0.08점만 상승하였다. 마지막으로 준법에 우호적인 태도에서는 실험집단의 평균 점수는 2.50에서 2.80점으로 0.30점이 상승하였다. 반면 통제집단의 평균 점수는 2.37점에서 2.32점으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의식의 행동적 영역은 ‘법 사용의사’와 ‘법적 효능감’의 두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변인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점수를 비교한 결과 법 사용의사에서는 실험집단의 평균 점수는 2.64점에서 2.92점으로 0.28점이 상승하였으나, 통제집단의 평균 점수는 2.85점에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법적 효능감에서는 실험집단의 평균 점수는 2.41에서 2.82점으로 0.42점이 상승하였다. 반면 통제집단은 2.44에서 2.52점으로 0.08점 상승하였다.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한 이후, 법의식의 하위변인 모두에서 실험집단의 평균 점수가 통제집단의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 점수의 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법의식의 사전 점수를 공변인으로 처리한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법의식 중 인지적 영역에 대한 법의 필요성 인식의 주효과(집단)에 따른 공변량분석 결과 실험집단 2.97점으로 통제집단 2.63점보다 높았으며  $p < .01$ 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지식을 살펴보면 통제집단이 2.53점으로 실험집단의 3.14점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효과에 따른 공변량분석 결과 집단별 주효과는  $p < .001$ 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의식의 정서적 영역에 대한 친근감과 준법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역시 실험집단

이 통제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효과(집단)에 따른 공변량분석이  $p < .001$ 에서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었고, 법에 대한 신뢰감 역시 실험집단이 2.82점으로 통제집단의 2.47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효과(집단)에 따른 법에 대한 신뢰감의 공변량분석이  $p < .01$ 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의식 행동 중, 법적 효능감은 실험집단이 2.82점으로 통제집단의 2.52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주효과(집단)에 따른 공변량분석 결과, 법적효능감은  $p < .01$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법의식 행동 중 법 사용의사는 실험집단 2.92점, 통제집단 2.85점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법의식의 공변량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법의식의 공변량분석 주요 결과

			소스	제 III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법의식 평균			공변인	.150	1	.150	3.716	.061
			집단	1.325	1	1.325	32.864***	.000
			오차	1.734	43	.040		
하 위 변 인	인 지 적	법의 필요성 인식	공변인	.039	1	.039	.323	.573
			집단	1.264	1	1.264	10.379**	.002
			오차	5.237	43	.122		
		법지식	공변인	.474	1	.474	1.979	.167
			집단	4.207	1	4.207	17.583***	.000
			오차	10.290	43	.239		
	정 서 적	법에 대한 친근감	공변인	.011	1	.011	.109	.743
			집단	1.138	1	1.138	11.676***	.001
			오차	4.191	43	.097		
		법에 대한 신뢰감	공변인	.303	1	.303	2.242	.142
			집단	1.233	1	1.233	9.114**	.004
			오차	5.818	43	.135		
		준법에 우호적인 태도	공변인	.042	1	.042	.303	.585
			집단	2.669	1	2.669	19.332***	.000
			오차	5.937	43	.138		
	행 동 적	법 사용의사	공변인	.053	1	.053	.531	.470
			집단	.030	1	.030	.304	.584
			오차	4.264	43	.099		
법적 효능감		공변인	.105	1	.105	.854	.361	
		집단	.985	1	.985	7.985**	.007	
		오차	5.307	43	.123			

\*:p<.05, \*\*:p<.01, \*\*\*:p<.001

위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실시한 법교육 프로그램은 비행청소년들의 법의식 중, 법의 필요성 인식, 법지식, 법에 대한 친근감, 법에 대한 신뢰감, 준법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법적 효능감 수준의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비행 청소년을 위해 구성된 법교육 프로그램을 실험집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법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프로그램이 비행 청소년에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조사 결과 법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 청소년의 평균 점수가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각 하위변인 중 부정적 문제지향, 합리적 해결기술, 충동부주의 반응 양식, 회피양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긍정적 문제지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둘째, 본 프로그램이 비행 청소년에 법의식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조사결과 법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 청소년의 평균 점수가 통제집단 청소년의 평균 점수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법의식의 하위변인 중 법의식의 행동적 영역의 법 사용의사를 제외한 모든 변인의 평균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법교육 프로그램은 비행 청소년의 보호요인을 강화시키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연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법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비행 청소년들은 문제해결능력과 법의식이 뚜렷하게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법교육 프로그램이 비행 청소년에게 유발되는 문제행동으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억제시키고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보호요인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측정 변인 중 문제해결능력의 하위 변인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기존에 법교육 프로그램이 문제해결에 어떠한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연구가 갖는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기존 비행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의 변화를 연구한 이미정(2004)은 비행 청소년의 부정적 문제지향이나 합리적 문제해결 능력은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나타나는 반면, 긍정적 문제지향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법교육 프로그램은 비행 청소년들의 부정적 문제지향 경향을 감소시키고, 충동부주의 경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합리적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비행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법교육 프로그램은 비행 청소년의 법의식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내에서 여자 비행 청소년 대상으로 유일하게 법교육을 진행한 연구결과와 거의 모든 면에서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법교육 프로그램이 비행 청소년의 법의식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법을 위반해 사법처리 과정에 있는 비행 청소년들에게 교정 교육 수단으로서 법교육이 적극 활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기존의 다양한 교육이나 치료 과정이 많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법을 위반함에 따라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측면에서는 법교육 프로그램이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거나 범죄예방을 위한 교정교육으로 효과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학문적 연구에 있어 법교육 프로그램이 비행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특히 비행 청소년 대상으로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적 연구도 극히 부족할 뿐 아니라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이번 연구는 이론적으로 제시된 법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제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그동안 비행 청소년의 재활능력을 향상시켜 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을 위반한 청소년들에 대한 법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비행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법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이 원인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 활용된 법교육 프로그램은 일반 교과 중심의 법교육 과정과 달리 비행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된 것으로 앞으로

사법처리 과정에 있는 비행 청소년이나 학교 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론과 실천의 통합적인 측면에서 비행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이론을 실천에 활용하는 토대를 만들고, 현장에서 검증을 통해 밝혀진 유용성과 한계 등을 제시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 법교육 프로그램이 활용되고 발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연구는 비행 청소년 대상으로 법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둘 수 있으나, 본 연구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의 몇 가지 내용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비행 청소년 가운데 안산대안교육센터에 위탁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비행청소년 전체에 대한 결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이에 향후에는 다양한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안산대안교육센터의 주어진 교육과정에 따라 1주 5일 과정의 단기과정으로 운영하였다. 이에 프로그램의 운영 효과가 실제 어떻게 지속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추수 연구와 장기간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 연구는 비행 청소년의 위험 행동을 약화시키고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로 법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비행 청소년의 문제는 과거부터 미래까지 사회가 존재하는 한 절대 해소될 수 없는 영원불변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이론이나 특정 프로그램으로 비행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는 할 수 없다. 다만, 청소년 비행이 점차 흉포화되고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법교육이 가정에서 시작되고, 사회적 환경에서 악화되는 복잡한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하지만 법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에 적합한 교육과정 중 하나로서 제시할 수 있다. 이에 앞으로 비행 청소년을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 연구가 더욱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 참 고 문 헌

- 강윤정(1991). 법의식 발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국가청소년위원회(2007). 청소년백서.
- 곽한영(2007). 법교육이 청소년의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남희(2007). 보호관찰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 향상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범주·이대성(2004). 권리보장교육 차원에서 사회과 법교육 수업 방법 탐색: 고등학교 『법과 사회』 과목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7권, pp. 101-127.
- 김영인(2002). 법교육과 참여학습방법, 시민교육연구, 제34권 제1호, pp. 45-60.
- 김준호(1996). 법의식과 청소년 비행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 연구, 제1권, pp. 61-87.
- \_\_\_\_\_(1996). 법의식과 비행의 관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_\_\_\_\_(2004). 청소년 비행의 태도에 관한 연구: 법의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김은경(1996). 법의식과 비행의 관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은(1998). 청소년의 재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해성 외(2007). 청소년 법의식 지표 개발 연구, 법무부.
- 류성욱(1995). 고등학교 학생의 법의식과 법교육 조사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용린(1994). 청소년의 도덕성, 법의식 발달, 비행경향성 및 법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92 연구보고서.
- 박성혁·곽한영(2007). 법교육학 개론, 한국학술정보.
- 박성혁·웅진환(2007). 참여형 법교육의 정당화 근거-Fox의 주장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제39권 제4호, pp. 47-66.
- 박성혁·이봉민(2003). 청소년 법정제도(Teen Court)를 활용한 학생선도프로그램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제37권 제1호, pp. 25-44.
- 박현선(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법무부-국정홍보처(2007). 법교육 강화를 위한 국민 법의식 실태 조사연구.

- 송성민(2007). 준법의식 유형에 따른 문제중심학습(PBL)의 효과에 관한 연구 : 노동법 수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의기(2008). 법무부 범죄예방정책 발전 대 토론회-범죄예방정책의 현황과 과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 양종국(2002). 비행청소년의 비행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과 재비행간의 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종국·김충기(2002). 비행청소년의 비행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과 재비행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제20권 제2호, pp. 101-121.
- 우성희(2007).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청소년 법교육 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국창(2008). 사회계층에 따른 청소년의 법의식 및 비행행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성경(2000). 청소년 비행예방 및 개입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비행 수준별, 비행 유형별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분석, 한국청소년상담원.
- 이동원(2004). 비행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재범가능성, 교정연구, 제24호, pp. 39-68.
- 이미정(2006). 청소년의 비행경험 수준에 따른 사회적 문제해결 훈련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제18권 제1호, pp. 71-91.
- 이상욱·김대영(1998). 초·중등학교의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안 모색, 영남법학, 제4권 제1-2호, pp. 495-532.
- 이수성(1984). 한국 청소년의 법의식에 관한 사회학적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25권 제2-3호.
- 이애령(2004). 청소년비행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재경(2000). 비행청소년을 위한 문제해결훈련 집단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6호, pp. 193-211.
- 정문자·송성자(2001).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모형개발, 대한 가정학회지, 제39권 제12호, pp. 239-251.
- 조현빈(2003). 청소년의 법의식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윤진 외(1995). 미국 법교육의 동향과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법무부.
- 최윤진 외(2005). 청소년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 '법은 내 친구', 사)청소년교육전략

21편, 법무부.

한국청소년개발원 편(2005). 청소년복지론, 도서출판 교육과학사.

\_\_\_\_\_ (2005).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론, 도서출판 교육과학사.

ABA(2005). *Guidelines for Preparing Law-Related Education(LRE) programs for At-Risk students*, ABA annual report 2005

D'zurilla, T. J, & Goldfried, M. R.(1971). *Problem solving and behavior modification*.

D'zurilla, T. J, & Nezu, A. M.(1990). Development and preliminary evaluation of 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SPSI). *Psychological Assessment; A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2*, pp. 156-163.

Fox, J. W.(1997). *Law-related education and juvenile justice-promoting citizenship among Juvenile offender*. Illinois: Charles C.Thomas Pub. Ltd.

Hunter, R.(1987). Law-related education practice and delinquency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Education, Vol. 2*, pp. 52-64

Naylor, David. T.(1977). "Law studies in the school: A competence of instructional strategies", *Social Education, March 1977*.

Lyles J. & Knepper P.(1997). "Teen court's potential as a law-related education medium: The experience do Franklin County, Kentukey", *Law-related education and Juvenile justice; Promoting citizenship among juvenile offenders*. Charles Thomas-Publisher, LTD.

Ross, R.(1990). *Time to think: A cognitive model of offender erhabilitation and delinquency prevention*. Research summary, University of Ottawa.

Williamson, D., Minor, K. I., Fox, J. W.(1997), *Law-related education and juvenile justice: Promoting citizenship among juvenile offenders*, C.C Thomas Publisher: Springfield

Wright, Norma D.(1996). *From risk to resiliency: The role of law-related education*, Center for civic education, Calabasas, CA.

Arizona foundation for legal service & education.

<http://www.azflse.org/academy>(검색일 : 2008 : 12. 10).

## ABSTRACT

### The Influence of a Law-Related Education Program upon Juvenile Delinquents

Lee, Young-Soo\* · Choi, Yun-Jin\*\*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a law-related education program which could decrease juvenile delinquents' risky behaviors and increase their ability to adapt and then examine its effects.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 distributed juvenile delinquents into both an experiment group and control group, and analyzed the results and verified the effectiveness of a law-related education program.

The sample of this research was made up of 46 juvenile delinquents who were attending a commissioned education course of Ansan Juvenile Justice Alternative Education Center, and we created a law-related education program which consisted of 10 sessions. Before starting the program, we conducted preliminary research into the associated legal consciousness and problem-solving abilities of juvenile delinquents, and there was, in addition, a post-test to inquire as to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For the purposes of analysis of the research, we carried out ANCOVA.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sub-variables of effectiveness except 'legal consciousness', 'the use intention of law' and 'the positive approach to problems' increased, which suggest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conclusion, a law-related education program is seemingly an effective program for preventing juvenile delinquents' repetitive commitment of delinquency, an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

\* Doctorial Student of Chung-Ang University

\*\* Chung-Ang University

this research, we suggest a supplementation of the program.

**Key Words** : juvenile delinquents, law-related education, risk-factors, protective factors, legal consciousness, problem-solving ability

투고일 : 9월 14일, 심사일 : 10월 26일, 심사완료일 : 10월 26일